

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609
--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6. 8. 21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 위원에 다양한 사회 계층 참여와 탄소중립 우수기관 지정 및 인센티브 근거 마련으로 탄소중립·녹색성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8조, 제3장 제목 및 제10조)

- (현행) 울산광역시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
- (개정)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

나. 위원 위촉 시 아동, 청년, 여성,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반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1조제4항)

다.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 우수기관(단체, 사업장 등) 지정 및 현판 등 수여 근거 규정(안 제31조)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없음, 가족복지과-23498(2026.6.11.)호

라. 입법예고: 2026. 6. 1. ~ 2026. 6. 21.(20일간) / 의견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”를 “기후위기대응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“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”를 “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위원회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”를 “기후위기대응위원회”로 한다.

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, 청년, 여성, 장애인, 노동자, 농어민, 중소기업인,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(탄소중립 우수기관 등의 지정)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기관, 단체, 사업장 등을 탄소중립 우수기관(단체·사업장)으로 지정하고 현판 등을 수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0조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11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울산광역시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·② (생략)	제8조(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<u>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</u>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<u>기후</u> <u>위기대응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.
제3장 <u>2050</u> <u>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</u>	제3장 <u>울산광역시 중구</u> <u>기후위기대응위원회</u>
제10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<u>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</u>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	제10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후위기대응</u> <u>위원회</u>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위원회 구성 및 임기) ① ~ ③ (생략)	제11조(위원회 구성 및 임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근거법규

□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·사회·교육·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,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,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.

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예측 등을 추진하고,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,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

야 한다.

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,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시·군·구 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국가기본계획, 시·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·군·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·군·구계획을 수립·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시·도지사”는 각각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으로 본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·군·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정부는 시·군·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·군·구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변경,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22조(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(이하 “지방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-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,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, 청년, 여성, 장애인, 노동자, 농어민, 중소기업인,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4항(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, 제13조제2항,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·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.

**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
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·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2.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
3.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,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
4.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사업의 범위와 내용 내에서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

3. 작성자

- 소 속: 환경위생과
- 직 급: 지방세무주사
- 성 명: 진선영
- 연락처: (052)290-3711